

민주노총 / 생명안전행동	취재요청		
	2023년11월20일 (화)	최명선 민주노총 010-9067-9640	노동안전보건실장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34

국회 생명안전포럼. 산재 피해자 유족, 현장 노동자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1월22일 (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 생명안전포럼, 생명안전행동

(1) 취지

- 중대재해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유예에서 또 다시 2년 연장을 하는 법안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 국민의 힘의 원 포인트 법안 발의, 노동부의 적용유예 연장 수용 입장 제출에 이어 11월 22일 국회 법사위 상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적용유예 연장 반대에 대한 국회, 노동 시민사회, 산재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기자회견 순서

- 강은미 국회의원 :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의원
- 산재 피해자 유족 발언 :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대표/ 김용균재단)
- 50인 미만 사업장 당사자 : 정현철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회장)
- 시민사회 단체 발언 :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상임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앞세운 법의 무력화 중단하라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생명권 안전권을 차별하고 박탈하는 국민의 힘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산재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고, 개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행위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입니다. 지난 11월3일 법원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며 두성산업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기각했습니다. 경영계와 보수언론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확인되자. 이제는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을 <민생>으로 둔갑시켜 개악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죽어나간 노동자가 10,245명이고, 작년엔 사고 사망으로만 707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의 목숨은 민생이 아니란 말입니까?

경영계는 답정너식 실태조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약 60%가 준비 가능하다고 하더니, 8월에는 응답자의 60%가 대표이사나 임원인 조사로 80%가 준비가 안 됐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부족을 연기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연장이 되면 안전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사업장은 5%에 불과합니다.

노동부 조사로는 대상 사업장의 81%가 이미 법 준수가 가능하거나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도 53%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법 시행 전 적용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자체 발주한 실태조사는 발표하지도 않고, 경영계 조사만 내세워 적용유예 연장 수용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디엘 이앤씨 7건 8명 사망을 비롯해서 노동부는 감독도, 수사도,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난 수십 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를 방치해 왔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71% 찬성으로 제정된 법이고, 2023년 지금도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82%, 처벌수위 완화에 반대한다는 72%입니다.

경영계와 보수 경제지는 왜곡된 실태조사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은 단순한 시기 연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은 노동부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작은 사업장은 적용유예 연장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을 통째로 사문화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는 모든 노동자 시민의 요구입니다.

산재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고, **개정안 폐기** 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국회 생명안전포럼, 생명안전행동, 산재피해자 유족

<중대재해 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의견서 개요>

1. 중대재해 80% 50인(억) 미만 사업장 발생. 10년간 10,245명 산재사망

- 2023년 11월3일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정 기각되자, 50인(억) 미만 적용유예로 무력화
- 10년간 50인(억)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12,045명. 사고 사망 76% 발생. 최근 3년은 80% 발생
- 법 제정 후 감소추세였으나 개악 추진 이후 증가추세. 2022년 전체 사고사망 (46명), 50인 미만 (37명) 모두 증가. 50인 이상 사고 사망 증가, 50인 이하 감소 주장은 여론 호도에 불과함

2.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

- 법에 규정된 <재발방지 대책, 시정명령 이행, 안전점검, 안전교육> 도 적용유예 되는 것
- 7명 청년 노동자 실명 메탄올 중독, 9명 사망 세일전자 화재 참사 반복되는 것
 - 노동부 시정명령 거부로 실명피해 추가 발생했으나 피해자 손해배상 별도 소송 4년소요
 - 2016년 화재 발생, 보험금 사기로 약 7억 착복한 세일전자, 2019년 화재로 9명 사망. 법 위반 밝혀졌으나, 사업주 관련 없다며 집행유예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9개 항 상당수 50인 미만 적용 대상 아님
 - 전담 인력, 산보위 설치 운영 적용 대상 아님. 예산, 인력등 하한액 기준 없음.
 -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자 자격 완화 등 중소기업장 적용 위한 제도개선 시행 중.
 - 안전보건 전문가도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 안전 법령 위반 사상 사고 3년 이상, 5년 이상 징역형 국내 법률도 차등 적용 사례 없음.
 - 환경범죄 단속법,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연구실 안전환경법을 비롯 국내외 사례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으로만 처벌 시 문제점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사망은 산안법 처벌 규정 없음. 특수고용 노동자 중대재해 대책 무력화
 - 산업안전보건법 솜방망이 처벌로 재범 비율 일반 형법의 2배. 3년간 9범 이상도 352명
 - 2021년 징역형 평균 7.4개월, 평균 벌금 488만원. 피해자 징벌적 손해배상도 불가능

3. 경영계 50인 미만 사업장 답정너 실태조사. 적용유예 연장하면 담당 인력 확충 5.4%

- 50인 이상 기업 적용 전 실태조사에서 법 준수 가능함 31.9% 였음.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 59.2%로 의무 준수 가능하다 응답 비율이 더 높음
- 중기중앙회 2023년 4월 조사 법 준수 가능하다 59.2%. 8월 조사 준비하지 못했다 80%로 뒤 집힌 결과. 8월 조사는 제조업 93%대상 대표이사 임원 64% 대상 실시로 답정너 조사
- 중기중앙회 8월 조사 준비하지 못한 이유 전문인력 부족 35.4%.. 그러나, 적용유예 연장하면 안전담당 인력 확충하겠다 5.4%에 불과함. 안전담당 조직 신설이나 확대 하겠다 3.5%

4. 노동부 조사 법상 의무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다 81%. 적용유예 연장 필요하다 20%

- 노동부 발주 한국안전학회 1,442개 사업장 조사
- 법상 의무 이미 갖추었거나 준비 중이다 82%, 안전보건 체계 이미 구축했거나, 내년까지 가능하다. 53%. 법 시행 전 적용유예 연장 필요하다 20%에 불과함.
- 안전교육 실시한다 91%, 위험성 평가 알고 있다 84%. 실시하고 있다 67%. 안전 활동 보고 받고 있다 75%

5. 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 기업은 안전 투자 확대. 기업 인식 변화

- 법 시행전 불가능하다 응답이 30%대 였던 50인 이상 기업. 법 시행 후 현장의 변화
- 2023 대한상의 조사 법 시행 100일 대비 1년 6개월 만에 담당부서 설치 45.2%에서 75.5%로 증가. 전담인력 둔 기업 66.9%로 2배 증가. 법 이행하고 대응 가능 기업 61.3%로 2배 증가
- 중처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관리자 안전의식 향상
- ‘선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위험작업 거부권,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확대, 위험성 평가 참여 보장 등 법 시행 이후 현장 변화 확대

6. 2023년 2,000명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되어야 한다 전체 82%, 처벌수위 완화 반대 72.4%, 사용자도 64.5% 처벌 수준 완화 반대

- 2022년 10월 재단법인 경청 의뢰 한국 갤럽 조사 중소기업 .1000곳 중 법 찬성 80%
- 2022년 중대재해 전문가 넷 667명 전문가 조사. 5인미만 적용확대해야 한다 77%
- 2023년 한국비정규 센터 2,000명 대상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되어야 한다 82%. 사용자도 72.6% 찬성, 법의 처벌 수준 완화 반대 전체 72.4%, 사용자도 64.5% 반대

7. 적용유예 연장은 단순한 시기 연장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무력화의 한 축

- 법 적용대상 중대재해 400건 이상이나 현재 기소는 30건 이내, 1심 판결은 10건 미만. 특히 7건 8명 사망한 디엘 이앤시 등 동일기업의 반복 사망도 기소조차 안 됨.
- 대기업은 봐주기 수사,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로 귀결